

대전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가단1262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7,68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6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324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장민하

별지1

목 록

1.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과수원, 886㎡
2.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로, 33㎡ 중 [갑구] 순위번호 8 피고 지분 2분의 1.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가. 원고는 체납자인 소외 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951,183,9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피고는 체납자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1) 종로세무서에서 2021. 11. 08. ~ 2021. 11. 27. 실시한 체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체납자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C, 1층 D, E, F호' 소재 'G((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도소매/귀금속)'에서 수입금액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22. 01. 31. 납기 등 부가가치세 및 과태료12건, 743,206,86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체납자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등에 대해서 2022. 05. 02. 납기 등 종합소득세 2건 154,057,7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2) 체납자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951,183,9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1> 채납자의 소제기일(2022. 6. 23.) 현재 국세채납액

(단위 : 원)

관할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채납액	본세	가산금	피보전채권
	합 계				951,183,910	897,264,560	53,919,350	471,088,220
종로	부가가치세	'16.01	'16.06.30	'21.07.31	40,102,280	36,291,730	3,810,550	36,291,730
종로	부가가치세	'16.07	'16.12.31	'22.01.31	46,215,210	43,599,280	2,615,930	43,599,280
강동	종합소득세	'16.01	'16.12.31	'22.05.02	159,771,920	153,997,040	5,774,880	153,997,040
종로	부가가치세	'17.01	'17.06.30	'22.02.15	49,687,810	46,875,320	2,812,490	46,875,320
종로	부가가치세	'17.07	'17.12.31	'22.02.15	27,915,990	26,335,880	1,580,110	26,335,880
종로	부가가치세	'18.01	'18.06.30	'22.02.15	18,882,340	17,813,540	1,068,800	17,813,540
종로	부가가치세	'18.07	'18.12.31	'22.02.15	24,058,310	22,696,540	1,361,770	22,696,540
종로	부가가치세	'19.01	'19.06.30	'22.02.15	42,256,390	39,864,540	2,391,850	39,864,540
종로	부가가치세	'19.07	'19.12.31	'22.02.15	33,010,310	31,141,820	1,868,490	31,141,820
종로	부가가치세	'20.01	'20.06.30	'22.02.15	25,068,000	23,940,930	1,127,070	23,940,930
강동	종합소득세	'20.01	'20.12.31	'21.11.30	62,440	60,660	1,780	60,660
종로	부가가치세	'20.07	'20.12.31	'22.02.15	29,864,160	28,470,940	1,393,220	28,470,940
종로	부가가치세	'21.01	'21.06.30	'21.09.30	1,160,320	1,102,750	57,500	-1)
종로	과태료	'22.01	'22.01.31	'22.02.26	453,128,430	425,073,590	28,054,840	-2)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대법원 2007. 0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

1) 사해행위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

2) 사해행위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

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21 판결 참조).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2항 1호 및 4호에 따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사안을 살펴건대, 세무조사 결과 채납자는 2016년 1기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① 2016년 1기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6. 06. 30, 2016. 12. 31, 2017. 06. 30, 2017. 12. 31., 2018. 06. 30., 2018. 12. 31., 2019. 06. 30, 2019. 12. 31., 2020. 06. 30., 2020.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16년 귀속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6. 12. 31. 및 2020.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해행위가 있었던 2021. 06. 23. 이전에 이미 2016년 1기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으며, ②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가까운 장래에 2016년 1기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③ 실제로 2022. 01. 31, 납기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2016년 1기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채납자에 대한 조세채권(2016년 1기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금액 471,088,22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21. 05. 27. 채납자에게 2016년 ~ 2020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이전에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단계로, 채납자는 이를 수령하고 2021. 06. 23. 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동일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동기소 접수 제324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갑 제4호증 등기우편 배송조화, 갑 제5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갑 제6호증 증여계약서).

나. 사해행위 당시의 채납자의 재산상태 및 채무조과의 심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3>과 같습니다(갑 제7호증 채납자 재산자료, 갑 제8호증 채납자 금융계좌 잔액내역, 갑 제9호증 채납자 금융채무내역, 갑 제10호증 개별공시지가 임시산정지가 회신, 갑 제11호증 부동산 간이 감정평가표).

조세채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이 이미 완성되어,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3> 사해행위일 현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사해행위일	적극재산		비고	소극재산		비고
2021.06.23.	토지 (서귀포 H)	87,687,000 ³⁾	별지목록1	조세채무	471,088,220	
	토지 (서귀포 I)	676,500 ⁴⁾	별지목록2	금융채무	340,000,000	
	금융자산	4,526,152				
	합계	92,889,652		합계	811,088,220	

라. 소결

채납자는 2016년 1기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세·고지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제 1, 2 부동산에 채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21. 06. 23. 채납자 소유의 별지 기재 제 1, 2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

4. 사해의 의사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제3의 나.항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납자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납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

3) $886\text{m}^2(\text{면적}) \times 98,970\text{원}(\text{감정가액}) = 87,687,420\text{원}(\text{백원 단위 절사})$

4) $33\text{m}^2(\text{면적}) \times 41,000\text{원}(\text{개별공시지가 임시산정가액}) \times 1/2(\text{피고 지분}) = 676,500\text{원}$

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피고는 채납자의 배우자로서 악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를 선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 자신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제척기간

이 사건 증여는 2021. 06. 23.에 이루어졌으므로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은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채납자의 국세채납액을 징수하고자 2022. 02. 10 .채납자 소유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면서, 채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합니다.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6. 12. 선

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 ①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하므로, 아래 <표4>와 같이 가액배상을, ②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는 채납자 명의로 원물반환 하는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표4> 가액배상액 산정내역

(단위:원)

①시가	②실제 피담보채무액	③목적물담보가액 (①-②)	④피보전채권액	⑤가액배상액 (min ③,④)
87,687,000	60,000,000	27,687,000	471,088,220	27,687,000
갑 제11호증	갑 제9호증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2021. 6. 23. 채납자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제 1, 2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납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배우자인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2015. 10. 1.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가, 2021. 6. 18.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변경

